

◇농촌진흥법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업인 조직의 육성, 우량종자 및 종축의 보급과 농업기술지도 등의 업무를 내용으로 하는 농촌지도사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현재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농촌진흥청장이 수립하고 있는 농촌지도사업기본지침을 「농촌진흥법」의 개정(법률 제8503호, 2007. 7. 13. 공포, 2008. 1. 14. 시행)을 통하여 농촌지도사업기본계획으로 수립하도록 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노무현** 인

2008년 1월 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대통령령 제20535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공동차고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3조 또는 제35조에 따른 협회 또는 연합회가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2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30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30조제5항 단서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경우”를 “경우(층수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5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다목을 각각 삭제한다.

제96조제3항 중 “총수의 3분의 2”를 “총수의 2분의 1”로 한다.

제109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 분과위원회가 분장하는 업무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제111조제2항 중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되며,”를 “위원 중에서 해당 시·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로 한다.

제112조제2항 본문 중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부시장·부군수(광역시외 관할구역안에 있는 군의 부군수를 포함한다) 또는 부구청장(자치구의

부구청장을 말한다)이 되며,”를 “위원 중에서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로 한다.

대통령령 제17816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 제13조제1항 중 “별표 27의 규정”을 “별표 18”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40퍼센트”를 “20퍼센트”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별표 18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7호 및 대통령령 제17816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 제13조제1항 관련)

별표 20 제1호차목부터 너목까지를 각각 카목부터 더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2호타목을 삭제한다.

차.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도시계획조례에서 따로 건축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1) 제2호카목(1)부터 (5)까지에 해당하는 것
- 2) 1일 폐수배출량이 2,000세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
- 3)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장.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중 폐기물 중간처리업(재활용만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으로서 1일 폐수 배출량이 2,000세제곱미터 미만이고 특정수질 유해물질이 배출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아래 표의 업종을 영위하는 공장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업종별 품목분류
17401	솜 및 실 염색 가공업
17402	직물 및 편조원단 염색 가공업
17403	날염가공업
17409	기타 섬유 염색 및 정리업
18201	원모피 가공처리업
19101	원피가공업
19102	재생 및 특수 가공가죽 제조업
21110	펄프 제조업
21121	신문용지 제조업
21122	인쇄 및 필기용지 제조업
21123	크라프트지 및 상자용 판지 제조업
21129	기타 종이 및 판지 제조업
23210	원유 정제처리업
23221	유탄유 및 그리스 제조업
23229	기타 석유정제물 제처리업
24111	석유화학계 기초 화합물 제조업
24112	석탄 화합물 제조업
24113	천연수지 및 나무화합물 제조업
24119	기타 기초 유기화합물 제조업
24129	기타 기초 무기화합물 제조업
24131	무기안료 및 기타 금속산화물 제조업
24132	합성염료, 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제조업
24141	질소, 인산 및 칼리질 비료 제조업
24149	기타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유기질 비료는 제외)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업종별 품목분류
24151	합성고무 제조업
24152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24153	가공 및 재생 플라스틱원료 생산업
24211	의학용 화합물 및 향생물질 제조업
24212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24230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품관련제품 제조업
24311	가정용 살균 및 살충제 제조업
24312	농약 제조업
24321	일반도료용 및 관련제품 제조업
24331	계면활성제 제조업
24332	치약, 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비누제조업중 성형 가공 및 치약 제조는 제외)
24341	비감광성 기록용 매체 제조업
24342	사진용 화학제품 및 감광재료 제조업
24391	가공 및 정제업 제조업
24392	방향유 및 관련제품 제조업(합성향료에 한함)
24394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24399	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화학제품 제조업
24401	합성섬유 제조업
25111	타이어 튜브 제조업
25112	타이어 재생업
25192	고무의류 및 기타 위생용 고무제품 제조업
25213	플라스틱 합성피혁 제조업
25221	벽 및 바닥 피복용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25292	플라스틱 접착테이프 및 기타 표면도포 제품 제조업
26121	유리섬유 및 광학용 유리제조업
26993	석면·암면 및 유사제품 제조업
27111	제철 및 제강업
27112	합금철 제조업
27119	기타 제철 및 제강업
27121	열간 압연 및 압출제품 제조업
27122	냉간 압연 및 압출제품 제조업
27123	철강선 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업종별 품목분류
27132	강관 제조업
27191	절단가공 및 표면처리강제 생산업
27199	그 외 기타 철강산업
27211	동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27212	알루미늄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27213	연 및 아연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27219	기타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27221	동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7222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7229	기타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7290	기타 제1차 비철금속 산업
27311	선출주물 주조업
27312	강주물 주조업
28921	금속 열처리업
28922	도금업
28923	도장 및 기타 피막 처리업
28929	기타 금속처리업
28991	금속 캔 및 기타 포장용기 제조업
31402	축전지 제조업(리튬이온 이차전지, 리튬이온폴리머 이 차전지, Ni-MH 이차전지는 제외)
31510	전구 및 램프 제조업
32192	인쇄회로판 제조업
37100	재생용 금속가공원료 생산업(단순히 파쇄, 압축, 절단 하는 경우는 제외)
37200	재생용 비금속 가공원료 생산업(단순히 파쇄, 압축, 절 단하는 경우는 제외)

별표 22 제2호마목 및 바목을 각각 바목 및 사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같은  
호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입지의 불가피성을 인정한 범위에서 건축하는 군사시설  
별표 27 제2호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별표 19 제2호자목, 별표 20 제1호차목 및 제2호카목의 공장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대통령령 제  
17816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 제13조의 개정규  
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적용례) 제111조제2항 및 제112  
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제111조제3항 및 제112조제3  
항에 따라 새로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연임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부터 적용한다.

제3조(미세분 관리지역 내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  
행 당시 세분되지 아니한 관리지역 안에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건  
축허가 등을 신청 중이거나 건축허가 등을 받은 분에 대하여는 대  
통령령 제17816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 제13조  
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이유**

세분되지 아니한 관리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관리지역의  
조속한 세분을 유도하기 위하여 미세분 관리지역의 건축제한  
을 강화하고, 관리지역 중 개발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계획관  
리지역에 소규모 공장설립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도시계획시설인 자동차정류장에 공동차고지를 포함시킴(영  
제2조).

-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 단체가 설치하는 공동차고지를  
도시계획시설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여 화물자동차의 차고  
지 확보에 어려움이 많았음.
-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 단체인 협회 또는 연합회가 설치  
하는 공동차고지를 도시계획시설 중 교통시설에 포함시킴.
- (3) 도심 내 화물자동차의 주차문제를 해소하고, 도로에의 불  
법 주차로 인한 도시미관의 훼손과 교통사고 발생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함.

나. 계획관리지역 내 소규모 공장설립 규제의 완화(영 제57조제 1항 및 영 별표 20 제1호)

- (1) 종전에는 계획관리지역 내에 1만 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공장설립의 허용 여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으나 대부분 정하지 아니하고, 또한 공장을 설립하려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로워 공장설립이 어려웠음.
- (2) 계획관리지역 내에 공장설립을 일반적으로 허용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절차를 생략하도록 하여 공장설립 절차를 간소화함.
- (3) 개발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 내에 소규모 공장의 설립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활동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꾀함.

다. 민간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요건의 완화(영 제96조)

종전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민간이 시행하려는 경우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등 요건이 까다로워 민간참여가 저조하였으나, 앞으로는 민간참여

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동의요건을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로 완화함.

라. 미세분 관리지역에 대한 건축제한 강화(영 대통령령 제17816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 제13조)

- (1)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지역을 세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원 등으로 인하여 적극적으로 관리지역을 세분하지 아니하고, 관리지역에 대하여 개발가능용도인 계획관리지역의 건축제한을 적용하고 있어 난개발의 소지가 있음.
- (2) 세분되지 아니한 관리지역에 대하여 관리지역 중 건축규제가 가장 강한 보전관리지역의 건축제한을 적용하도록 함.
- (3) 세분되지 아니한 관리지역에 대하여 건축제한을 강화함으로써 미세분 관리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속한 관리지역의 세분을 유도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국토관리체계를 조기에 구축함.

<법제처 제공>